

의안번호	2213970
의 퇴 인	전용기의원
회 답 일	2025.11.24.
추 계 번호	25B59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음.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u>계속하여</u> 주차하는 경우 • (현행)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 (개정안) 계속하여	재량규정의무규정
2	안 제15조제2항제4호 (관리방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1) 및 제3항을 준용함(제2항)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u>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u>계속하여</u> 주차하는 경우 • (현행)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 (개정안) 계속하여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3제3항제3호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3항) 3.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u>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u>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u>계속하여</u> 주차하는 경우 • (현행)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 (개정안) 부설주차장 • (현행)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 (개정안) 계속하여	재량규정

1)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제2항제4호 (관리방법)	
3	안 제19조의3제3항제3호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2. 상세 사유

□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행위 제한 등(안 제8조의2제1항제6호 신설 및 안 제15조제2항제4호)

-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요금이 징수
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
정함으로써, 현행법상 같은 주차구획에서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던 행정조치의 범위를 동일한 주차장 내 장기주차에 대
하여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
여 주차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
소로 견인·보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단속 대상 차량 이
증가할 경우 강제견인 및 보관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인력, 견인차량 운영

비용, 보관장소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주차장별 장기 무단 주차차량 발생 건수, 강제견인 건수, 필요한 행정인력, 차량별 보관일수 및 단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부설주차장의 주차행위 제한 등(안 제19조의3제3항제3호)

-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견인·보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한 경우에만 가능하였던 행정조치의 범위를 부설주차장 전체의 장기주차까지 확대하고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단속 대상 차량이 증가할 경우 강제견인 및 보관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인력, 견인차량 운영비용, 보관장소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부설주차장 운영 규모, 장기 무단 주차차량 발생 건수, 강제견인 건수, 필요한 행정인력, 차량별 보관일수 및 단가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전국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 현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2025.9)

구분	(개소) (면)	주차장 계	노상주차장 ¹			노외주차장 ²			부설주차장 ³
			소계	유료	무료	소계	공영	민영	
합계	(개소)	1,934,718	23,411	13,088	10,323	26,856	16,181	10,675	1,884,451
	(면)	30,016,342	504,659	183,956	320,703	1,276,994	865,148	411,846	28,234,689
서울	(개소)	313,448	9,407	9,407	—	1,853	1,104	749	302,188
	(면)	4,694,269	70,584	70,584	—	99,823	73,933	25,890	4,523,862
부산	(개소)	76,776	1,153	880	273	3,684	687	2,997	71,939
	(면)	1,837,501	26,136	22,047	4,089	88,257	26,384	61,873	1,723,108
대구	(개소)	70,296	1,372	209	1,163	829	554	275	68,095
	(면)	1,263,067	32,325	5,453	26,872	39,487	29,350	10,137	1,191,255
인천	(개소)	81,201	1,490	202	1,288	919	675	244	78,792
	(면)	1,597,460	47,557	7,161	40,396	48,771	36,112	12,659	1,501,132
광주	(개소)	35,586	166	5	161	802	294	508	34,618
	(면)	741,152	3,958	430	3,528	32,572	13,926	18,646	704,622
대전	(개소)	56,801	364	38	326	617	369	248	55,820
	(면)	1,024,772	16,948	3,695	13,253	31,614	15,087	16,527	976,210
울산	(개소)	52,932	129	66	63	1,205	330	875	51,598
	(면)	743,774	20,451	15,777	4,674	50,490	21,872	28,618	672,833
세종	(개소)	12,973	11	2	9	87	70	17	12,875
	(면)	180,580	277	46	231	5,944	4,477	1,467	174,359
경기	(개소)	540,128	4,157	1,883	2,274	3,403	2,103	1,300	532,568
	(면)	8,282,570	114,105	43,726	70,379	244,675	149,058	95,617	7,923,790
강원	(개소)	93,752	806	88	718	1,466	1,153	313	91,480
	(면)	1,063,522	27,782	3,842	23,940	75,815	63,765	12,050	959,925
충북	(개소)	76,569	200	26	174	848	594	254	75,521
	(면)	1,044,390	14,183	769	13,414	43,715	32,595	11,120	986,492
충남	(개소)	90,757	243	18	225	1,429	1,084	345	89,085
	(면)	1,633,608	8,149	1,011	7,138	70,361	58,998	11,363	1,555,098
전북	(개소)	45,604	447	5	442	1,265	848	417	43,892
	(면)	878,110	16,390	219	16,171	63,659	43,094	20,565	798,061
전남	(개소)	71,000	360	26	334	2,081	1,699	382	68,559
	(면)	1,032,502	18,578	787	17,791	115,402	92,664	22,738	898,522
경북	(개소)	124,746	950	71	879	2,067	1,478	589	121,729
	(면)	1,402,846	28,224	2,717	25,507	96,484	80,630	15,854	1,278,138
경남	(개소)	135,895	1,364	155	1,209	2,920	1,910	1,010	131,611
	(면)	2,109,462	49,695	5,325	44,370	128,743	87,138	41,605	1,931,024
제주	(개소)	56,254	792	7	785	1,381	1,229	152	54,081
	(면)	486,757	9,317	367	8,950	41,182	36,065	5,117	436,258

주 1.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전체가 공영)

2.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

3. 부설주차장: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

자료: 국토교통부